

2026년 제2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2026년 제2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응시에 참조하여 주십시오.

2026년 5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시험일정 및 시험시간

○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시험장
제1차시험	'26.7.16.~22.(7일간)	'26.8.29.(토)	'26.9.14.(월)	(대전) 충남대 백마교육관
제2차시험	'26.10.1.~7.(7일간)	'26.10.31.(토)	'26.11.17.(화)	

- ①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단, 원서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접수할 수 없음
- ② 상기 일정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시험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예정
- ③ 제1차시험 접수자는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서류 검토 결과 응시자격 미달, 서류 미흡 등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 시험접수 내역이 취소될 수 있음.
- ④ 09시 20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여유 있게 도착 요망

○ 시험시간

- 입실 시간 : 09:20까지
- 제1차 시험시간 : 10:00 ~ 12:00(총 120분)
- 제2차 시험시간 : 10:00 ~ 12:00(총 120분)
- * 응시자는 반드시 입실 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 입실시간(09:20) 이후 고사장 입장 불가(고사장은 본 자격시험의 고사실(교실)이 있는 건물을 의미하며, 09시 20분 정각에 해당 건물의 주 출입구를 폐쇄하므로 입장이 절대 불가)

2. 시험과목

※ 시험문제와 답안은 비공개하며, 시험 종료 후 문답지 전부 회수

구 분		과목명	문항 수/배점	문제 유형
원예	제1차 시험	① 스마트농업의 이해 및 시설·장비 구축·관리	25/100	객관식 (5지 선다형)
		② 스마트농업 운영 및 관리	25/100	
		③ 정보통신기술기반 데이터 분석	25/100	
		④ 상담 및 교육방법론	25/100	
	제2차 시험	① 스마트농업관리실무	12/100	주관식 (단답형·서술형)
축산	제1차 시험	① 스마트농업의 이해 및 시설·장비 구축·관리	25/100	객관식 (5지 선다형)
		② 스마트농업 운영 및 관리	25/100	
		③ 정보통신기술기반 데이터 분석	25/100	
		④ 상담 및 교육방법론	25/100	
	제2차 시험	① 스마트농업관리실무	12/100	주관식 (단답형·서술형)
① 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함				
② 제2차시험의 경우 문제에 따라 부분 점수가 있을 수 있음				

○ 각 분야 과목별 출제범위 및 문제구성 등은 [붙임1] 스마트농업
관리사 자격시험 출제기준을 참조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스마트농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2)

– 아래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분야	응시자격
원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평가법」에 따른 시설원예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업무(농업 분야의 전문기술을 활용한 재배·생산·가공 등의 업무, 스마트농업 관련 기기·설비·시스템 등을 설치·운영·관리하는 업무 또는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지도·서비스를 제공·관리하는 업무 등을 말하며, 이하

분야	응시자격
	“스마트농업관련업무”라 한다)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스마트농업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스마트농업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축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또는 축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스마트농업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스마트농업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스마트농업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사항(경력기간 산정방법, 경력증명, 관련학과의 범위,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인정 신청 등)은 ‘[붙임2]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을 참조하여 응시원서 접수

○ 응시제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이미 보유한 사람은 해당 자격을 보유한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자격시험에 원서접수 및 응시할 수 없음. 다만, 보유 분야와 다른 분야의 자격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음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동일하게 적용함

4. 합격자 결정 기준

○ 제1차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응시자

○ 제2차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시험점수가 60점 이상인 응시자

* 제출서류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접수마감 이후 접수가 절대로 불가함

구 분	접수기간	응시표 출력
제1차시험	'26.7.16.(목), 09:00 ~ 7.22.(수), 18:00 (7일간)	'26.8.26.(수) ~
제2차시험	'26.10.1.(목), 09:00 ~ 10.7.(수), 18:00 (7일간)	'26.10.28.(수) ~

- ①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단, 원서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접수할 수 없음
-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됨
- ③ 주말 및 공휴일 일정 등을 고려하여 원서 접수할 것을 당부

○ 접수방법 : 지정 홈페이지(자격정보시스템)에서 개별 접수

- <https://license.kpc.or.kr/qplus/sfm>

- (또는) <https://sfm.kpc.or.kr>

* 홈페이지에 미리 회원 가입하여 원서접수 준비 요망

** 단체접수 및 우편·방문 접수 불가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을 파일(JPG·PNG 파일, 해상도: 150dpi × 200dpi, 500KB 이하)로 등록
- 수험자는 접수완료(수수료 결제) 후, 홈페이지에서 접수여부를 확인

○ 접수내용

- 응시원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 증빙자료 :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단계별 내용을 입력한 후 최종적으로 원서접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이 응시자에게 있음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에 편의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시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 임신부 및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에 편의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시 별도 시험실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 응시원서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50dpi×200dpi 이상에 3.5cm×4.5cm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만 인정이 되며 이 외에 본인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등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증명사진은 본인의 정면이 나오도록 하되,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아야 하며, 과도한 사진 수정을 하지 아니하여 본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응시표 출력 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서류제출

- 서류 제출기간 : '26. 7.16.(목) 9:00 ~ '26. 7.22.(수) 18:00 (7일간)
 - *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 대상자가 제출기간 내에 증명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서류심사 후 부적격자일 경우 원서접수가 자동 취소될 수 있음
 - * 제1차 시험 면제자(제1차 시험에 합격하여 다음 회에 실시하는 제1차 시험이 면제되어 재응시한 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불필요
- 경력/학력 산정 기준일 : 1차 시험 시행일('26. 8. 29.(토))
- 제출된 서류는 순차적으로 검토하며, 검토 결과 보완 필요시 응시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응시자격 증빙자료 보완
 - * 자격시험 홈페이지 상 본인의 연락처를 확인해야하며 번호 기입 오류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서류 보완이 어려운 경우 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에 합격한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가 거짓(위조)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을 비롯하여 형사처벌(공문 및 사

문서의 위변조 등)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 서류

분야	응시자격 유형	제출서류
원예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원예기사 또는 시설원예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 확인서)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업무(농업 분야의 전문기술을 활용한 재배·생산·가공 등의 업무, 스마트농업 관련 기기·설비·시스템 등을 설치·운영·관리하는 업무 또는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지도·서비스를 제공·관리하는 업무 등을 말하며, 이하 “스마트농업관련업무”라 한다)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스마트 농업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스마트농업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스마트농업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축산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또는 축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 확인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사항 확인서)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스마트농업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스마트 농업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스마트농업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스마트농업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하며 경력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한다.

1. [붙임2]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2.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농업경영체 운영 또는 영농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가. 농업법인 등기부 등본
 - 나. 농업인 확인서
 - 다.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 라. 축산업 허가증
 - 마. 가축사육업 허가증
 - 바.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 사.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 위 호의, 1. 경력증명서 제출 시 피고용인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회사가 폐업하여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붙임 3]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호의 1.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경력증명서류의 유효기한은 1년 이내에 발급된 자료에 한하며, 기준일은 경력/학력 산정 기준일과 동일하게 제1차시험 시행일('26.8.29.)로 한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위 호의 1. 경력증명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서류 제출방법 :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온라인 제출
- 서류검토 및 응시자료 보완 : '26.7.16.(목) ~ 7.31.(금)
- * (자료보완) 제출서류 검토 후 보완 필요 시 개인별 유무선 안내
- 서류검토 마감 : ~ '26.8.4.(화)

○ 응시수수료 납부

- 응시료 : 제1차시험 30,000원, 제2차시험 40,000원
- * 응시료 결제까지 처리해야만 원서접수가 완료됨
- 1·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계좌이체 납부 시 반드시 '응시자명'으로 입금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이용

○ 응시수수료 환불

- 환불방법 :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ense.kpc.or.kr/qplus/sfm>)를 통한 인터넷 온라인 취소 및 환불

- 반환 기준 및 응시원서 접수 취소 후 반환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계좌이체의 환불 결과는 별도 통보되지 않음

[반환 기준]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책임인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부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전부
- 응시자격 서류 검토 결과 '부적격'인 경우: 응시수수료의 전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실시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응시수수료의 50% 환불
-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환불 불가**
- 시험 결사자: 납부한 수수료 **환불 불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책임인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시험 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접수취소 기간 이외의 환불 100% 조건(시험 30일 경과 일까지 신청(증빙서류 必))

- 1) 응시자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 또는 同 직계가족(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이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2)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 3)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원서 접수 취소 후 반환 절차] * 반환액은 카드사 등의 사정으로 취소에 시일이 걸릴 수 있음.

- 신용카드: 결제 취소(승인/매입 취소)
- 계좌이체: 이체·사용한 계좌로 입금

○ 응시표 교부

- 제1차시험 응시표 출력기간 : '26.8.26.(수) 9:00 ~ 8.29.(토) 9:20
- 제2차시험 응시표 출력기간 : '26.10.28.(수) 9:00 ~ 10.31.(토) 9:20
- 응시표에는 시험일시, 입실 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원서접수 완료(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6. 이의신청 접수

○ 제1차 시험 이의신청

- 합격자 발표 : '26.9.14.(월) * 평균 점수 및 과목별 점수 통보
- 이의신청 기간
 - (출제문제) '26.8.29.(토) ~ 9.1.(화) 4일간
 - (채점결과) '26.9.14.(월) ~ 9.20.(일) 7일간
- * 응시자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사본)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열람 신청 후 신분증 지참 必, 접수기간 경과 후 이의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음
- 신청내용 : 출제 문항 오류 및 채점 결과 등
- 신청 및 답변 :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 신청 및 답변
- 이의신청 검토 및 답변 기간
 - (출제문제) '26.9.2.(수) ~ 9.11.(금) 10일간
 - (채점결과) '26.9.21.(월) ~ 9.30.(수) 10일간

○ 제2차 시험 이의신청

- 합격자 발표 : '26.11.17.(화) * 합격여부 및 점수 통보
- 이의신청 기간
 - (출제문제) '26.10.31.(토) ~ 11.3.(화) 4일간
 - (채점결과) '26.11.17.(화) ~ '26.11.23.(월) 7일간
- * 응시자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사본)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열람 신청 후 신분증 지참 必, 접수기간 경과 후 이의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음
- 신청내용 : 출제 문항 오류 및 채점 결과 등
- 신청 및 답변 :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 신청 및 답변
- 이의신청 검토 및 답변 :
 - (출제문제) '26.11.4.(수) ~ 11.13.(금) 10일간

(채점결과) '26.11.24.(화) ~ 12.3.(목) 10일간

7.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합격자 발표

시험 구분	합격자 발표	발표내용	발표방법
제1차시험	◦ '26.9.14. 예정	- 개인별 합격 여부 - 과목별 득점 및 평균	자격정보시스템 개별 확인 및 문자 통보
제2차시험	◦ '26.11.17. 예정		

* 시험에 합격한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가 거짓(위조)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 처분을 비롯하여 형사처벌(공문 및 사문서의 위변조 등)을 받을 수 있음

○ 자격증 발급

- 신청기간: '26.12.4.(금)~10.(목) * 자격증 발급일자: 2026.11.17.
- 신청방법: 자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수수료 수납 후 발급(발송)

8. 응시자 일반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제출서류 접수상의 기재착오,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해야 함 (단, 사전에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 시험시행 당일에 시험장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협소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험의 일정 등 변경될 수 있으며 사유 발생 시 별도 공지함
- **시험장은 09:20에 주출입구를 폐쇄하며, 폐쇄 후 입장할 수 없음**
- 응시자는 시험 당일 09:20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 검정 볼펜 등을 지참하여 본인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 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인정 신분증 미지참 시 시험 응시 불가**

- 시험일 당일 질환 발생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 등 시험관계자에게 문의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아래의 신분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하며, 신분 확인 시 모자·마스크 등을 벗어야 함

인정 신분증

- ① 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 ② 국내운전면허증(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 ③ 기간만료 전의 여권(신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된 여권정보 증명서 필요)
- ④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모바일 신분증 확인용 앱: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 앱(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은 정부24앱에서 확인된 신분증만 인정(통신사 패스(PASS)앱 등을 활용한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음)

** 모바일 신분증은 지정된 앱을 실행시켜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신분증 사용 후 시험시작 전까지 반드시 전원을 종료하여야 함 (시험 중 전원이 연결되어 발생하는 부정행위 처리 등의 문제는 본인 책임임)

***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통신 오류 등으로 신분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물 신분증을 준비하여 응시하기를 권고

**** 화면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시간 기준은 네이버 시계를 기준으로 함(백시계 등은 참고용)

○ 시험시간 관리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간 내에 답안 작성을 완료하여야 함

○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 불가하고 조기 퇴실(11:40부터) 가능

* 조기퇴실 가능시간(11:40) 전에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 시험 **무효처리**

○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

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 이의신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함

○ 기타 시험 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격시험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의 귀책임

○ 제1차시험 답안 마킹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감독관에게 답안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번짐·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 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 제1차시험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지정 필기구 미사용) 응시자의 부주의(인적사항 미기재, 답안지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유형 마킹착오 등)로 판독 불능, 중복 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 책임으로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은 가능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하여야 함. 시험 종료 안내방송이 나오면 답안을 일절 작성할 수 없으며, 답안지 교체 후에는 교체 전 답안지를 폐답안지로 처리함

제1차시험 답안 작성시 주의 사항

1. 매 문제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OMR 답안지 내 해당문제 답항에 “●”로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2.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작게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 OMR 관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예시] 올바른표기: ● 잘못된 표기: ○ ⊗ ⊖ ⊕ ⊙ ⊖ ⊕ ⊙
3. 두 개 이상의 답을 마킹한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4. OMR 답안지 내 성명, 수험번호, 문제유형 등 표기란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미입력 및 인식불가 시 답안지가 무효 처리 됩니다.

○ 제2차시험 단답·서술형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함(연필 등 지워지는 필기구 또는 유색의 필기구 사용을 금지)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제2차시험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부분을 두 줄(=)로 긋고 해당 답안칸에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2차시험은 시험지(배점표시)·연습지·답안지(자필기입용 OMR)를 제공하고, 시험종료 후 모두 회수함

제2차시험 답안 작성시 주의사항

1. 단답·서술형은 지정된 답안 작성란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정된 답안 작성란 외에 작성할 시 무효 처리됩니다.
2. 단답·서술형 답안 작성란에는 문제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낙서나 특이한 기록 사항 등을 기재해서는 안 되며, 부정의 목적으로 특이한 표식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모든 득점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단답·서술형의 경우 한 문제에서 소문제로 파생되는 문제나, 가지 수를 요구하는 문제는 부분 점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단답·서술형 답안은 국립국어원 표준어 및 외래어 표기법에 준하여 채점이 진행됩니다. (스펠링 오류나 오자는 오답 처리, 영어 약어 표기 인정)
5.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울 경우 채점위원 과반수 이상 의견으로 채점합니다.

○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됨

실격 사유 및 부정행위 기준

[실격사유]

- 필수 지참물(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시험 도중 휴대폰을 포함한 전자통신기기 등을 사용하는 자
- 폭력으로 다른 응시자를 위협하는 자 → 즉시 시험 중단 및 고발 조치
- 시험운영위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자
- 기타 실격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자

[부정 행위]

-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와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자
- 답안 카드를 다른 수험자와 교환하는 자
-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OMR 카드 등)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답안지를 작성한 자
- 다른 수험자를 위해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한 자
- 다른 응시자의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지를 제출한 자
- 시험 중에 물건을 주고받는 자
-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카드를 작성한 자
- 사전에 문제를 알고 시험에 응시한 자
- 대리시험 응시자 및 응시하게 한 자
- 답안지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지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자
-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응시한 자
 - 시험 종료 후 답안지와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여 계속 답안을 작성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수험표 등 문제지와 답안지가 아닌 곳에 문제 또는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문제 및 답안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인터넷,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복원·공유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므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핸드폰, 스마트워치 등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 및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워치 • 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태블릿,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 파일변환기(MP3), 휴대용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 라디오 등
- * 시험문제 출제 내역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계산기(非메모리, 非전송)를 일괄 지급할 수 있음(종료시 일괄 회수)

- 시험 중 벨소리 등이 울릴 경우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반드시 전원을 끄도록 할 것

9. 기타 안내사항

- 장애인·임산부(건강상 사유로 별도 배려가 필요한 응시자 포함) 편의 제공
 - 편의제공을 희망하는 장애인, 임산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편의 제공 내용을 작성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5일 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임산부 증명서, 진단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 편의제공 기준은 원서접수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확인
-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1차 시험은 개별점수 및 합격자 발표·공개, 제2차시험은 개별점수 및 합격자 발표 공개·예정 (자격정보시스템에서 개별확인)
- 시험을 공고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 등을 통해 안내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정보시스템(<https://license.kpc.or.kr/qplus/sfm>)을 참조하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문의: (고객센터) 1577-9402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1) 원예분야
가) 필기 출제기준

필기 검정방법		객관식	문제수	100	시험시간	120분
과목명	문제수	주요항목	세부항목			
1. 스마트농업의 이해 및 시설장비 구축·관리	25	1. 스마트농업 연구 및 신기술	1. 스마트농업 현황 및 전망분석			
			2. 스마트농업 정책 및 제도			
			3. 스마트농업 관련 신기술 파악 및 연구			
		2. ICT시설·장비 선정 및 구축점검	1. ICT 시설 및 장비 선정·구성			
			2. ICT 시설 및 장비 설치점검			
		3. ICT시설·장비 운영관리	1. ICT 시설 및 장비 소프트웨어 작동 및 조절			
			2. ICT 시설 및 장비 하드웨어 작동 및 조절			
			3. 스마트농업 시설·장비 유지보수			
2. 스마트농업 운영 및 관리	25	1. 생산관리	1. 작물생리 및 재배관리			
			2. 종자·육묘관리			
			3. ICT 기반 생육·결실관리			
			4.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2. ICT기반 환경제어	1. ICT 기반 토양관리			
			2. ICT 기반 시비관리			
			3. ICT 기반 양액·배지관리			
			4. 병해충관리			
			5. ICT 기반 복합환경조절 및 관리			
		3. 시설 및 장비·안전관리	1. 농기계 및 기구관리			
			2. 농자재관리			
			3. 재해대응 및 안전관리			
3. 정보통신기술기반 데이터 분석	25	1. ICT기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1. ICT 기반 데이터 기록 및 관리			
			2. ICT 기반 데이터 분석 및 해석			
		2. ICT기반 경영분석·관리	1. 농업경영분석			
			2. ICT 기반 농업경영 성과관리			
4. 상담 및 교육방법론	25	1. 스마트농업 상담·자문	1. 스마트농업 상담			
			2. 스마트농업 코칭			
			3. 스마트농업 문제해결			
		2. 스마트농업 교육 및 지도	1. 스마트농업 교육 계획 수립			
			2. 스마트농업 교육 운영			

나) 실기 출제기준

실기 검정방법	서술형 및 단답형 혼합 주관식	총 12문제	시험시간 120분
과목명	주요항목	세부항목	
1. 스마트농업 관리 실무	1. ICT시설 · 장비 선택 및 구축점검	1. ICT 시설 및 장비 선정 · 구성	
		2. ICT 시설 및 장비 설치점검	
	2. ICT시설 · 장비 운영관리	1. ICT 시설 및 장비 소프트웨어 작동 및 조절	
		2. ICT 시설 및 장비 하드웨어 작동 및 조절	
		3. 스마트농업 시설 · 장비 유지보수	
	3. 생산관리	1. 작물생리 및 재배관리	
		2. 종자 · 육묘 관리	
		3. ICT 기반 생육 · 결실 관리	
		4.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4. ICT기반 환경제어	1. ICT 기반 토양관리	
		2. ICT 기반 시비관리	
		3. ICT 기반 양액 · 배지 관리	
		4. 병해충관리	
		5. ICT 기반 복합환경조절 및 관리	
	5. ICT기반 경영분석 · 관리	1. 농업경영분석	
		2. ICT 기반 농업경영 성과관리	
	6. ICT기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1. ICT 기반 데이터 분석 및 해석	
	7. ICT데이터 기반 상담 · 자문	1. 스마트농업 상담 및 코칭	
		2. 스마트농업 문제해결	
	8. 스마트농업 교육 및 지도	1. 스마트농업 교육 계획수립	
		2. 스마트농업 교육 운영	

2) 축산 분야

가) 필기 출제기준

필기 검정방법		객관식	문제수	100	시험시간	120분
과목명	문제수	주요항목	세부항목			
1. 스마트농업의 이해 및 시설장비 구축·관리	25	1. 스마트농업 연구 및 신기술	1. 스마트농업 현황 및 전망분석			
			2. 스마트농업 정책 및 제도			
			3. 스마트농업 관련 신기술 파악 및 연구			
		2. ICT시설·장비 선정 및 구축점검	1. ICT 시설 및 장비 선정·구성			
			2. ICT 시설 및 장비 설치점검			
		3. ICT시설·장비 운영관리	1. ICT 시설 및 장비 소프트웨어 작동 및 조절			
		2. ICT 시설 및 장비 하드웨어 작동 및 조절				
		3. 스마트농업 시설·장비 유지보수				
2. 스마트농업 운영 및 관리	25	1. 생산관리	1. 사육생산관리			
			2. 번식 및 개량관리			
			3. ICT 기반 육성 및 비육관리			
			4. 축산물 생산·출하관리			
		2. ICT기반 환경제어 및 분뇨관리	1. ICT 기반 농장데이터 축사환경관리			
			2. ICT 기반 급수 및 급이관리			
			3. 분뇨 및 악취관리			
			4. 질병관리			
			5. 방역위생관리			
		3. 시설 및 장비·안전관리	1. 시설 및 장비 관리			
			2. 사료관리			
			3. 초지관리			
	4. 재해대응 및 안전관리					
3. 정보통신기술기반 데이터 분석	25	1. ICT기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1. ICT 기반 데이터 기록 및 관리			
			2. ICT 기반 데이터 분석 및 해석			
		2. ICT기반 경영분석·관리	1. 농업경영분석			
			2. ICT 기반 농업경영 성과관리			
4. 상담 및 교육방법론	25	1. 스마트농업 상담·자문	1. 스마트농업 상담			
			2. 스마트농업 코칭			
			3. 스마트농업 문제해결			
		2. 스마트농업 교육 및 지도	1. 스마트농업 교육 계획 수립			
			2. 스마트농업 교육 운영			

나) 실기 출제기준

실기검정방법	서술형 및 단답형 혼합 주관식	총 12문제	시험시간 120분
과목명	주요항목	세부항목	
1. 스마트농업 관리 실무	1. ICT시설 · 장비 선택 및 구축점검	1. ICT 시설 및 장비 선정 · 구성	
		2. ICT 시설 및 장비 설치점검	
	2. ICT시설 · 장비 운영관리	1. ICT 시설 및 장비 소프트웨어 작동 및 조절	
		2. ICT 시설 및 장비 하드웨어 작동 및 조절	
		3. 스마트농업 시설 · 장비 유지보수	
	3. 생산관리	1. 사육생산관리	
		2. 번식 및 개량관리	
		3. ICT 기반 육성 및 비육관리	
		4. 축산물 생산 · 출하관리	
	4. ICT기반 환경제어 및 분뇨관리	1. ICT 기반 농장데이터 · 축사환경관리	
		2. ICT 기반 급수 및 급이관리	
		3. 분뇨 및 악취관리	
		4. 질병관리	
		5. 방역위생관리	
	5. ICT기반 경영분석 · 관리	1. 농업경영분석	
		2. ICT 기반 농업경영 성과관리	
	6. ICT기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1. ICT 기반 데이터 분석 및 해석	
	7. ICT데이터 기반 상담 · 자문	1. 스마트농업 상담 및 코칭	
		2. 스마트농업 문제해결	
	8. 스마트농업 교육 및 지도	1. 스마트농업 교육 계획수립	
		2. 스마트농업 교육 운영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기간 산정방법) 실무경력의 기간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정하며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중의 처분 기간은 경력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3. 경력환산은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4.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기간 내에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경력증명 등) ①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경력증명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하며 경력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증명서
2.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농업경영체 운영 또는 영농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가. 농업법인 등기부 등본
 - 나. 농업인 확인서
 - 다.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 라. 축산업 허가증
 - 마. 가축사육업 허가증
 - 바.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 사.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② 시험실시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경력인정의 취소) 시험실시권기관의 장은 실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시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관련학과의 범위) ① 규칙 별표2의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 따른 연관과목 중 3개 이상 전공으로 포함된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인정 신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의 인정 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련학과 인정 신청의 경우

가. 교육과정 편성내역

나. 교육과정 설명자료

2. 연관과목 인정 신청의 경우

가. 교과목 강의계획

나. 교과목 설명자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기간 종료일(신청을 수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일을 말한다)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스마트농업과의 연관성 여부를 심사한 후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이 인정 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심사가 완료되어 부결 처리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력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증명사항	재직기간	소속 및 직위	담당 업무내용(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					
	~					
이 증명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으니 위의 경력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및 이와 비슷한 행위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명칭 또는 상호: 소재지: 기관납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table><tr><td rowspan="2">대표자: (서명 또는 인)</td><td>작성자 직·성명</td></tr><tr><td>(서명 또는 인)</td></tr></tabl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직·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직·성명					
	(서명 또는 인)					

스마트농업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심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기관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신청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fax		
신청분야	관련학과 [], 연관과목 []	자격분야	원에 [], 축산 []
심사대상	관련학과 명칭 또는 연관과목 명칭 기입		
신청목적 또는 신청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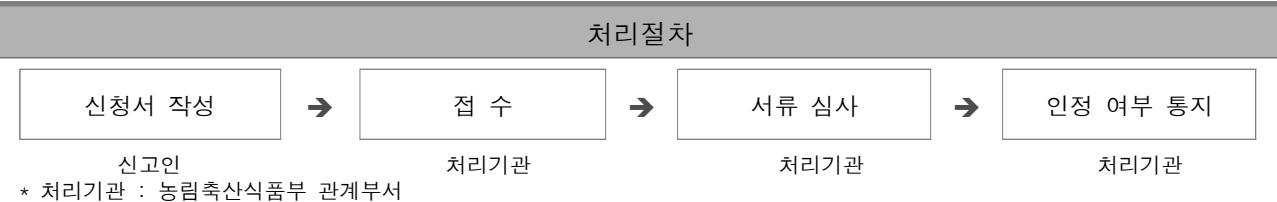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스마트
농업 관련학과[], 연관과목[]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장 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스마트농업 관련학과 (제5조 관련)

분야	학 과 명
원예	AI스마트팜융합전공, 가드닝전공, 과수전공, 국제농업개발협력과정, 국제농업기술학과, 국제식량안보학과, 그린바이오과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농공학과, 농림생물자원학부, 농산물안전성학전공, 농산업학과, 농생명·바이오, 농생명과학과, 농생명바이오시스템학과, 농생명유전체학전공, 농생명화학과, 농생물학과, 농수산비즈니스전공, 농업공학전공, 농업기계공학과, 농업생명과학계열, 농업생명과학대학 무전공학과, 농업생명자원학과, 농업자원학전공, 농업토목공학과, 농학과, 농화학과, 바이오기능성소재학과, 바이오키노시시스템공학과, 바이오섬유소재학과, 바이오소재과학과, 바이오소재전공, 바이오시스템공학과, 바이오에너지공학과, 바이오융합학과,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바이오한약자원학전공, 반려동물학과, 버섯전공, 북방농업학과, 분자생명공학전공, 생명공학부, 생명과학대학자유전공학부, 생명산업학과, 생명자원개발이용학, 생명자원공학부, 생명자원과학과, 생명자원융합학과, 생명자원응용과학과, 생명자원학과,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생물응용학전공, 생물자원과학과, 생물자원학과, 생물환경화학과, 수소융합스마트팜학과, 스마트귀농귀촌학부, 스마트그린자원학과, 스마트농산업학과, 스마트농업시스템공학과, 스마트농업시스템기계공학과,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스마트농업융합학과, 스마트농업전공, 스마트도시농업복지학과, 스마트생물산업기계공학과, 스마트시스템과학과, 스마트식량자원전공, 스마트원예계열, 스마트원예과학전공, 스마트원예산업과, 스마트원예전문기술석사과정, 스마트원예조경과, 스마트원예학과, 스마트팜공학과, 스마트팜과, 스마트팜과학과, 스마트팜농산업학과, 스마트팜농수산복지학과, 스마트팜도시농업과, 스마트팜에너지과, 스마트팜융합바이오시스템공학과, 스마트팜융합학부, 스마트팜치유산업과, 식량생명공학과, 식량생명공학전공, 식량안보 및 농업개발학과, 식량자원과학과, 식량작물전공, 식물방역학과, 식물생명공학과, 식물생명과학과, 식물생명환경전공, 식물생산과학부, 식물소재산업과학과, 식물의학과, 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 식물자원조경학과, 식물자원학과, 식물자원환경전공, 식물치유복지학과, 식물치유클리닉학과, 약용작물산업학과,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 원예·바이오시스템공학, 원예·조경학과, 원예·식품학과, 원예과학과, 원예디자인학과, 원예산림학과, 원예생명공학과, 원예생명과학과, 원예생명조경학과, 원예육종학과, 원예치료전공, 원예학과, 원예환경시스템전공, 웰빙귀농조경학과,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응용생명과학과, 응용생물공학과, 응용생물학과, 응용생물화학부, 응용식물과학과, 응용식물학과, 자연자원학과, 자원식물개발학과, 작물·

	산림학부, 작물과학전공, 작물생산과학부, 저탄소스마트농업학과, 정원문화산업전공,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지역시스템공학과, 지역특화산업학부, 지역환경토목학과, 채소전공, 첨단농산업계열, 첨단영농전공, 치유농업과, 친환경농업학과, 친환경농학과, 탄소중립바이오시스템융합전공, 특용식물학과, 특용작물전공, 평생직업융합학과, 플라워·가드닝과, 플로리스트과, 한약개발학과, 한약자원학과, 허브조경과, 화훼경영전공, 화훼원예과, 화훼전공, 화훼플로리스트과, 환경농학전공, 환경디자인원예학과, 환경생명공학과, 환경생명화학과, 환경원예·조경학과, 환경원예과
축산	AI말산업학부, 가금전공, 곤충생명과학과, 낙농전공, 농공학과, 농림축산융합학과, 농생명바이오시스템과, 농업공학전공, 농업기계공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무전공학과, 농업시스템학과, 농업토목공학과, 대가축전공, 동물공학과, 동물매개치유학과,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동물보건복지학과, 동물보건학과, 동물보호학과, 동물사육복지과, 동물산업융합학과, 동물산업학과, 동물생명공학과, 동물생명과학과, 동물생명융합학과, 동물생명자원과학과, 동물응용과학과, 동물자원·식품과학·유통학부, 동물자원과학과, 동물자원생명과학과, 동물자원전공, 마사학과, 마산업자원학과, 말/특수동물학과, 말산업반려동물전공, 말산업스포츠재활과, 말산업전공, 말산업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바이오융합학과, 반려동물과, 반려동물관리과, 반려동물보건과, 반려동물보건산업학과, 반려동물산업전공, 반려동물스타일리스트과, 반려동물전공, 반려동식물학과, 산업곤충전공,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스마트농업시스템공학과, 스마트농업시스템기계공학과, 스마트농업시스템학과, 스마트농업전공, 스마트생물산업기계공학과, 스마트시스템과학과, 스마트에그리푸드시스템, 스마트축산계열, 스마트축산전문기술석사과정, 스마트축산학과, 스마트팜공학과, 스마트팜에너지과, 스마트팜융합바이오시스템공학과, 승마산업전공,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애완동물학과, 양돈전공,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중소가축전공,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지역시스템공학과, 지역환경토목학과, 질병매개곤충학과, 축산BT학과, 축산과학과, 축산학과, 축산환경학과, 탄소중립바이오시스템융합전공, 특수동물학과, 펫케어과, 한우전공

※ 비고

1. 과, 학과, 학부, 전공, 학전공, 계열, 과정(이하 “학과등” 이라 한다)은 같은 의미로 본다.
2. 학과등의 신설, 폐지 또는 명칭변경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등에 대해서는 해당학과등의 교과과정을 고려하여 위 표의 관련학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석사 이상의 학위에 대하여는 세부전공명칭이 관련학과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세부전공을 한학과 명칭이 관련학과 명칭과 동일할 경우 관련학과 학위로 인정한다.

※ 2025년 관련학과 인정심의 결과 인정학과: (원예) 자연숲치유산업학과

※ 2026년 관련학과 인정심의 결과 인정학과: (원예) 스마트농수산업융합전공,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도시농업치유복지전공, 스마트팜바이오학과 (축산) 생태과학과, 스마트팜학과

스마트농업 연관과목 (제5조제2항 관련)

계열	과 목 명
원예 (67)	(원예·식용·특용)작물학, ICT시스템기초, 과수원예학, 농산물유통마케팅학, 농약학, 농업경영학, 농업교수법, 농업교육론, 농업기계학, 농업기상학, 농업통계학, 바이오센서, 생물공정시스템, 생물화학, 생물환경시스템공학, 생육환경에너지제어, 생체역학, 생화학, 수경(양액)재배학, 수확후생리및관리학, 스마트농(산)업학, 스마트농업시스템공학, 스마트농업시스템자동제어, 스마트농업시스템프로그래밍, 스마트농업정보공학, 스마트농업특론, 스마트농업환경관리학, 스마트양분관리학, 스마트작물방제학, 스마트재배생산, 스마트팜개론, 스마트팜경영분석, 스마트팜기초공학, 시설원예학, 식량작물학, 식물공장(생산)학, 식물번식학, 식물병학, 식물분류학, 식물생장발달학, 식물영양학, 식물학, 식물해충학, 약용식물학, 온실관리 및 경영학, 원예식물해부학, 원예작물학, 원예전산학, 원예학, 원예환경학개론, 작물보호학, 작물생리·생태학, 작물생태학, 작물유전체학, 작물유전학, 작물육종학, 재배학, 조경원예학, 조직배양학, 종묘생산학, 채소원예학, 채종원예학, 천연물화학, 친환경농업, 토양비료학, 토양학, 특용작물학
축산 (57)	HACCP의 이해, ICT시스템기초, 가금학, 가축분뇨자원화, 가축위생학, 가축유전학, 곤충생태학, 곤충학, 근육식품학, 낙농미생물학, 낙농학, 농·축산가공학, 농림수산생태학, 농산물유통마케팅학, 농업경영학, 농업교수법, 농업교육론, 농업기계학, 농업통계학, 동물내분비학, 동물번식생명공학, 동물생식세포학, 동물영양학, 동물육종학, 동물해부생리학, 바이오센서, 반추동물영양생리학, 사료작물자원공학, 사료학, 사양관리, 생물공정시스템, 생물환경시스템공학, 생체역학, 스마트농(산)업학, 스마트농업시스템공학, 스마트농업시스템자동제어, 스마트농업시스템프로그래밍, 스마트농업정보공학, 스마트농업특론, 스마트동물질병학, 스마트팜개론, 스마트팜경영분석, 스마트팜기초공학, 식육과학, 양돈학, 유가공학, 유식품화학, 유우관리학, 육가공학, 초지학, 축산가공학, 축산경영학, 축산물유통학, 축산법규, 축산시설학, 축산학개론, 한우학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목명에 ‘학’, ‘(개,원,범,본,특)론’, ‘일반’, ‘기초’, ‘임상’, ‘고급’, ‘최신’, ‘응용’, ‘(및)실(험,습,무)’, ‘(및)연(습,구)’, ‘세미나’, ‘과제’ 등과 같은 명칭이 붙는 경우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2025년 연관과목 인정심의 결과 인정 과목

- (축산) 낙농식품미생물학, 발효식품소재학, 발효유가공학
- (원예) 농식품유통론, 농업경영학, 식품자원경제통계학개론, 식품산업경영경제론

※ 2026년 연관과목 인정심의 결과 인정 과목 : (원예) 농산업경영학, 농식품마케팅, 농업경제통계, 농식품산업경제학, 농장경영계획학 (축산) 수산및축산식품가공학, 농산업경영학, 발효식품소재공학, 발효식품소재공학및실험, 스마트팜경제학, 스마트팜데이터과학, 실험통계학, 축산학기초, 스마트팜계측및제어, 축산시설및환경, 농업경제통계, 농식품산업경제학, 농장경영계획학, 농식품마케팅

사실확인서

수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근무직장명	직위	재직기간	담당업무내용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본 사실확인서는 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필요한 경력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증명이 허위, 위조 등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사문서위조, 변조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아래와 같이 입증합니다.

입증인 성명	(인)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		본인과의 관계	
주소			
근무처	직위	근무처	전화번호

※ 입증인 : 객관적으로 수험자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동일 사업장 또는 직종에서 근무하는 자 등)

※ 위 사실확인서의 진위확인과정에서 자료보완 등을 위해 추가서류(입증인의 인감증명서, 공증확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력확인불가·허위작성 등이 발견되면 반려되거나 관련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될 수 있음

첨 부 : 입증인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끝.

사실 확인서 입증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수집목적	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증명
수집근거	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 직위
이용기간	수집목적 달성 시 폐기

※ 입증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험자의 경력사항이 입증되지 않아 응시자격서류심사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